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규칙

규정번호	3-2-9
제정일자	1997.03.01
개정일자	2016.03.01
개정번호	Ver. 12 총페이지 29

제정	1997년	3월	1일	개정	2011년	3월	21일
개정	1999년	3월	1일	개정	2011년	5월	13일
개정	2005년	3월	1일	개정	2012년	3월	1일
개정	2006년	3월	1일	개정	2012년	4월	30일
개정	2009년	3월	1일	개정	2013년	6월	1일
개정	2010년	3월	1일	개정	2015년	3월	1일
				개정	2016년	3월	1일

제1조(목적) 교수업적평가(이하 “업적평가”라 한다)는 교원의 업무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교원의 자기 계발과 학문수준 고양,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교수업적(이하 “업적”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원의 교육활동, 산학협력활동, 연구활동 및 봉사활동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적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업적평가는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전체 교원(일반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산업체경력교원, 실습교원, 강의교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분야) 업적평가는 다음과 같은 네 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일반교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 중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 ① “교육분야”는 학생에 대한 강의, 실험실습지도, 성적평가, 학생지도 등 학생에 대한 교육에 관련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② “산학협력분야”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한 각종 수탁 연구, 특허, 기술 개발 및 학생 취업 등 본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③ “연구분야”는 논문, 저서, 역저, 보고서, 창작 활동, 발표, 전시회 등 교원 자신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이를 표출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 ④ “봉사분야”는 대학 내의 각종 보직 활동, 위원회 활동, 사회 봉사활동, 자문 활동, 학회 활동 등과 같이 대학 내외의 활동을 통하여 대학, 국가, 지역 및 산업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활동을 말한다.
- ⑤ 삭제 <개정 2015.03.01>

제5조(평가위원회) ① 업적평가를 그 목적에 맞도록 구현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은 따로 정한다

제6조(평가기준) ① 각 분야별 평가 기준은 [별첨1]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에 따른다.
 ② 교수업적 평가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평가기간) ① 업적평가는 매년 5월말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3.01>

② 업적평가 대상 기간은 업적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직전 2개 학기로 하되 장기 연수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5.03.01>

제8조(강의평가) 교육분야의 업적평가를 위하여 수강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강의평가의 방법과 실시는 [별첨2]강의평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9조(평가 및 자료의 제출) ① 각 교원은 업적평가 실적자료를 수시로 해당 행정부서에 제출한다.

② 제출된 업적평가자료는 행정부서 담당자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수시로 입력한다.

③ 각 교원은 매학년도 종료 후 업적평가보고서를 출력하여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처는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① 위원회는 업적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최종 평가표를 작성한다.

② 업적평가보고서에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증빙자료가 미비된 업적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평가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의 제외) ① 5개월 이상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속으로 교수활동분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대상 학기의 평가를 제외한다. 단, 본인의 원에 의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행정처장 및 부처장직을 수행하는 교원은 그 행정보직에 재직하는 대상기간 동안 평가를 제외한다.

제12조(이의 신청)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중간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03.01.>

제13조(자료 보안) 본인 이외의 업적평가 결과물의 임의 열람은 금지하며, 업적평가 결과물을 열람 또는 출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적평가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평가결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 기준은 해당 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총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지침)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발의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 이전에 실시된 교수평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3) (경과조치) 제6조 관련 업적평가 평정기준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조 관련 업적평가 평정기준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교수업적 평정기준 <개정 2016.03.01>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 1 장 총 관

1. 평가 분야 : 평가분야는 교육분야, 산학협력분야, 연구분야 및 봉사분야 평가로 나눈다.
2. 평가 기간 및 배점 : 각 분야의 평가 대상 기간과 배점은 표 1-1에 표시된 바와 같다.

표 1-1 분야별 업적평가 대상 기간 및 배점

평가 분야	평가 기간	배점
교육분야	2개학기 평균 또는 누적	35%
산학협력분야	2개학기 누적	30%
연구분야	2개학기 누적	20%
봉사분야	2개학기 누적	15%

3. 총 점수 : 개별교수의 업적평가 최종 획득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획득점수} = \text{교육분야 획득점수} + \text{산학협력분야 획득점수}$$

$$+ \text{연구분야 획득점수} + \text{봉사분야 획득점수} + \text{가점}$$

단,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업적평가 최종 획득점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text{획득점수} = \text{교육분야 획득점수} + \text{산학협력분야 획득점수} \times 1.5$$

$$+ \text{연구분야 획득점수} + \text{봉사분야 획득점수} + \text{가점}$$

4. 분야별 평가단위, 반영비율, 최대점수 : 각 교원은 표 1-2에 표시된 바와 같은 각 분야별 반영비율 및 분야별 최대점수까지만 획득점수로 인정한다. 교수업적평가의 결과는 평가단위에 따라 활용할 수도 있다.

표 1-2 분야별 평가단위, 반영비율 및 최대점수

분야	교육		산학협력		연구	봉사
	교육	교육협동	산학지도 및 기술협력	산학 공동협력		
평가단위	개인	학부(과)	개인	학부(과)	개인	개인
반영비율	30%	5%	20%	10%	20%	15%
최대점수	150	25	100	50	100	75

5. 개별교수 업적평가의 결과는 총 획득점수에 의한 등위백분율(%) 및 개인평가단위 획득 점수에 의한 등위백분율(%)로 표시한다.
6. 모든 점수의 계산 시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만 표시한다.
7. 점수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은 항목은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 일정 기간 외부 체류나 정기적인 출근이 필요한 각종 연수나 연구 등의 경우는 사전에 학교 당국에 신고 되어 있는 것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항목으로 표시되지 않은 사항 중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남기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경우는, 본인의 신청과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점수를 줄 수 있다.
10.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업적을 2가지 이상의 항목에 적용할 수 없다. 단, 2가지 이상의 항목에 적용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교수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
11. 각 교수가 작성한 평가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시는 평가위원회는 해당 교수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만일 고의성 있을 시는 해당 교수에게 이를 통보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장 교육 분야

1. 교육 분야의 업적은 교육 세부분야와 교육협동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교육 분야의 범위 및 배점은 표 2-1 ~ 표 2-2와 같다.

표 2-1 교육 세부분야의 평가항목 및 배점

부 문	항목번호	항목내용	점수	비 고
시간표	1101	시간표 작성지침 준수	5/4/3/2/1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학사일정 준수	1102	강의계획서 입력 및 성적 입력 기간 준수	5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반 지도교수	1103	2반 이상 / 1반	10/8	·1년 평균 ·1항목 택일
	1104	비반 지도교수 학생 면담 (12건/8건 이상)	8/4	
학생행사 지도	1105	학생행사 참석	2점/건	·학과/학교단위 행사만 인정 ·최대 5건 이내
과목 책임교수	1106	책임 교과목수 (4과목이상/3과목/2과목)	5/4/3	
담당 교과목	1107	강의 담당 교과목수 (6과목이상/5과목/4과목)	5/4/3	
대회지도	1108P	전국규모대회 입상	2점/건	·입상 이상 인정 ·최대 5건 인정
교수력향상 프로그램	1109	교수력 향상 프로그램 참여	2점/건	·최대 3건 인정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1110	강의녹화형/화면녹화형	12/10	·1건만 인정
교육·교수법 관련	1111	교육·교수법 관련 워크샵·세미나·특강 개최 또는 강의	3점/건	·최대 3건 인정
전공 심화과정	1112	전공심화과정 운영	2점	·신설
실험실습 관리	1113	실험실습관리 평가	5	·전임 교원임용규칙 [별표 20-1]의 평가에 따름
강의 평가	1114P	강의평가 설문	70	·[별첨2] 강의평가 시행세칙

※ 세부시행지침

- 1) 1101 : ① 최저/최대시수 미준수, ② 주당수업일수 4일 미만, ③ 1일 6시간 초과, ④ 학기당 2개 과목 담당 미만 (위반건당 1점씩 감점한다.)
- 2) 1102 : 강의 계획서와 성적을 마감 전 미입력 시 과목당 1점 감점한다.
- 3) 1104 : 비 반 지도교수 학생 면담은 지도교수를 담당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하며, 학생면담일지제출(이름, 학번, 연락처, 면담내용 및 학부(과)장 확인)에 한하여 인정한다.
- 4) 1105 : 학생행사 지도는 신입생 OT, 노들축제, 체육대회, 입학식, 졸업식, 졸업생간담회 등 교학처에서 인정한 학생/학교행사에 한하여 학부(과)장이 참석을 확인한 경우에 인정한다.
- 5) 1101, 1102의 항목은 2개 학기 점수에 대한 평균값을 득점으로 한다.
- 6) 1106 : 교과목 책임교수는 동일교과목에 대하여 교수 2인 이상, 2강좌 이상 개설된 강좌의 경우에만 인정한다.
- 7) 1107 : 강의담당 교과목에서 프로젝트과목(2명이상 공동 지도인 경우)과 현장실무 과목은 제외한다. 기타 제외 과목은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8) 1108P : 전국규모 이상의 경진대회, 공모전, 작품전등에 지도 학생이 참가하여 입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인정하며, 해당 배점은 단독 지도를 기준으로 한 점수이며 공동 지도인 경우 참여교수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한다.
- 9) 1109 :
 - 학생 상담, 진로 지도, 교수 학습법, 산업체 현장 신기술 습득 등의 교수력 향상 관련 특강 및 연수의 참가를 말한다.
 - 8시간 이상의 특강 및 연수만 인정하며, 교수학습센터 및 기타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10) 1110 : 멀티미디어콘텐츠 개발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교내연구과제로 공모한 과제에 한하여 인정하며 해당 득점은 단독 연구를 기준으로 한 점수이다.
- 11) 1111 : 교육·교수법 관련 특강 등 개최 및 강의는 사전에 해당 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2) 1112 : 학부(과)에서 진행하는 전공심화과정 운영을 말한다. 운영되고 있는 학부(과)당 1건으로 인정하고 운영학과 교수에게 개인점수를 부여한다.
- 13) 1113 : 실험실습관리 점수는 전임교원임용규칙 [별표 20-1]의 학부(과) 실습관리 평가표 및 실험실습관리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14) 1114P : 강의평가 점수는 [별첨2] 강의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평가한다. 과목별 점수는 강좌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하고, 교수별 점수는 전체강좌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강의평가 점수 계산방법은 [별첨2]의 표 2-1과 같다.

표 2-2 교육협동 세부분야의 평가항목 및 배점

부 문	항목번호	점수	비 고
외래교수 강의평가	1T01	학부(과)별 외래교수 강의평가점수평균 × 2.5	
재학생 유지율	1T02	유지율(%) × 0.1	

※ 세부시행지침

- 1) 강의평가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 평가기준은 학부를 원칙으로 하며 독립학과는 학과 단위로 한다.
- 3) 외래교수는 산업체겸임교수와 시간강사를 포함한다.
- 4) 재학생 유지율(%) = 재학생수 ÷ 편제정원 × 100

제 3 장 산학협력 분야

1. 산학협력 분야의 업적은 산학지도 및 기술협력 세부분야와 산학공동협력 세부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산학협력 분야의 범위 및 배점은 표 3-1 ~ 표 3-2과 같다.

표 3-1 산학지도 및 기술협력 세부분야의 범위 및 배점

부 문	항목번호	항목내용	점수	비 고
현장실습 지도	2101	현장실습과목의 협약 및 수행을 위한 산업체 방문	1점×방문건수	·결과보고서제출
취업지도	2102	학생취업을 위한 산업체 방문	2점×방문건수	·결과보고서제출 ·업체당 1건 인정
	2103	취업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운영	2점×건수	·결과보고서제출(멘토, 멘티 프로그램 및 인턴 연계 포함)
산업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2104	산업체 재직자 교육 주최, 운영 또는 강의	2점×운영건수	·결과보고서 제출
캡스톤 디자인 지도	2105P	학생들이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 제작한 설계물을 국내외 경연대회에 출품하도록 지도하여 입상한 실적	3점×건수	·증빙서류 제출
학생 창업지도	2106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 지도한 실적	5점×건수	
	2107P	전국규모 창업 관련 경진대회 입상 지도	3점×건수	
	2108	기술 창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점×건수	·창업동아리 /포럼 포함
산학연구 보고서	2109P	공공기관, 대기업 수탁 연구보고서	30점	
	2110P	교외 수탁보고서	20점	
	2111	교내 산업 기술연구지 게재 논문	15점	

부 문	항목번호	항목내용	점수	비 고
기술이전	2112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실시권을 허용하여 발생한 수입	100만원당 1점	
특허	2113P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국내에 등록된 특허건수	30/20	·본교 임용 이후 출원에 한함
산업체 연구비 수혜	2114	본 대학 명의의 각종 수탁(연구, 기술 개발 등 포함,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따른 기업 대응투자액 제외)에 의한 연구비 수혜액/간접 연구비 기여	300만원당 1점/50만원당 1점	·한가지 항목만 선택
연구소 유치	2115	총장의 승인을 받은 대학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실적	10점×건수	
교원창업	2116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된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교수가 창업한 실적	10점	
학교 기업	2117	학교 기업에 참여한 실적	5점	
신기술·제품인증	2118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신기술 및 제품 등의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정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승인, 인증 등을 받은 실적	10점×건수	·증빙서류 제출
기술·경영자문	2119P	본 대학, 정부 또는 산하 공공기관이 의뢰한 산업체에 기술 또는 경영 자문을 실시한 실적	1점×1일 (4시간이상)	·결과보고서 및 일지 제출
산학협력 협약	2120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계약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회사를 유치한 실적	2점×협약 체결건수	·증빙서류 제출
	2121	산업체 네트워크 유지 실적	2점×방문 건수	·업체당 1건 이내 인정
산업체 파견	2122P	연구년 또는 방학기간 동안 국내외 기업에서 기술 연수 및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한 실적(3일/1주/2주/3주/4주 이상)	1/2/3/4/5점	·관련 서류, 결과보고서 및 일지 제출 ·산업체 기술 연수 추가 인정
산업체 특강	2123	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방문 특강을 실시한 실적	1점×건수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세부시행지침

- 1) 산학협력분야 업적의 점수는 단독 활동을 기준으로 한 점수이며, 참여자(운영자, 방문자, 지도교수 등)가 복수인 경우 참여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한다. 단, 2109P, 2110P, 2111, 2113P, 2114, 2118 항목의 경우에는, 2인, 3인, 4인 공동 수행은 각각 단독 수행의 70%, 50%, 30% 실적으로 하며, 5인 이상인 경우는 (100/전체수행자 수)%의 실적으로 한다. 또한 2109P, 2110P, 2111, 2114, 2118 항목의 과제책임자의 경우에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동일 실적에 대해서는 2109P 및 2110P 항목과 2114 항목 중 한 가지 실적만을 인정한다.
- 2) 2101, 2102 : 해당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2103 :
 - 전공자격 취득 특강, 전공 실무능력 향상 특강, 취업 특강, 모의 면접, 취업 설명회 등 정규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및 행사를 말한다.
 -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 및 인턴 연계 사업도 포함된다.
 - 해당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4) 2104 : 운영주체가 학부(과)이어야 하고, 해당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5) 2105P :
 - 캡스톤 디자인은 교육과정 중에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육 활동을 말한다.
 - 캡스톤 디자인 관련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 지도 학생이 참가하여 입상 이상의 상을 받은 경우 인정하며, 해당 배점은 단독 지도를 기준으로 한 점수이며 공동 지도인 경우 참여교수 수로 나누어 점수를 산정한다.
- 6) 2106 :
 - 재학생 또는 졸업후 2년 이내의 지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 창업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지도하였으며, 학생창업 지원 과정 및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증빙서류를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7) 2107P : 창업과 관련된 경진대회만 인정한다.
- 8) 2108 : 제출된 증빙서류를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9) 2109P, 2110P : 정부, 공공기관, 공공재단 및 타 대학 등의 연구보고서는 연구자의 소속이 동양미래대학교로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교외수탁보고서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에 의해 진행된 보고서만 인정한다. 다년 계약에 의한 과제 연구보고서는 최종 보고서만 인정한다. (2112 항목과 중복 인정이 가능함.)

10) 2112 :

- 동양미래대학교 총장 또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만 인정한다.
- 기술지도, 공동연구 등 완료되지 않은 기술의 이전이나, 합작투자, 인수·합병의 방법을 통한 기술이전은 제외한다.

11) 2113P : 특허는 출원일 및 등록일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등록공보를 제출하며, 등록권자에 동양미래대학교 또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포함된 경우만 인정한다.

12) 2114:

- 동양미래대학교 또는 동양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계약하고, 소정의 간접 연구비를 공제하는 경우에 한하되 간접연구비 공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간접연구비 기여 금액에 따른 배점 기준은 50만원당 1점씩 부여하며, 다년 계약인 경우 매년 간접연구비를 공제한 경우 인정한다.
- 현물 기부인 경우 신규 산학협력 협약 체결 항목(2120 항목) 1건으로 인정한다.

13) 2116 :

-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학협력단 내규에 의한 일정 지분을 학교에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창업후 1년 이후에는 매출 1억이상 또는 순익이 발생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일부 성과가 이전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14) 2118 :

- 산학협력단을 통한 과제에만 해당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증빙서류를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15) 2119P :

- 공공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공시하는 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 산하단체 등)을 의미하며, 그 외의 공공기관에 대한 인정 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해당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1일(4시간 이상)당 1점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결과보고서 및 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2120, 2121 : 신규업체 발굴 후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한다.

17) 2122P : 해당 산업체에서 직접 파견을 요청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인정한다.

표 3-2 산학공동협력 세부분야의 범위 및 배점

부 문	항목번호	항목내용	점수	비 고
학부(과) 취업률	2T01	학부(과) 취업률 * 0.5		
산업체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2T02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주문식교육, 위탁교육 운영 등)	2점×건수	

※ 세부시행지침

- 1) 2T01 : 취업률은 당해 학년도 기준일로 평가한다. 신설학과의 경우에는 졸업생이 배출되는 학년도까지 해당학과 교수의 업적평가는 해당학과를 제외한 학교 전체의 취업률로 평가한다. 교양과의 경우에는 학교 전체의 취업률로 평가한다.
- 2) 2T02 :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운영되고 있는 학부(과)당 1건으로 인정하고 운영학과 교수에게 개인점수를 부여한다.

제 4 장 연구 분야

1. 연구분야는 논문, 저서등의 일반연구 세부분야와 전시, 창작등의 실기 세부분야로 구성된다.
2. 연구분야의 범위 및 배점은 표 4-1 ~ 표 4-2과 같다.

표 4-1 일반연구 세부분야의 범위 및 배점

부 문	항목번호	항목내용	점수	비 고
논문	3101P	SCI 급/국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기타학술지	75 /50 /25	·기타학술지 게재 논문은 최대 25점 이내(년간)
학술대회	3102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논문	5	·최대 20점 이내(년간)
저서	3103P	전공과 관련된 신규 주교재/부교재·NCS기반 교수학습지침서/번역서	50 /30 /10	·강의 활용 교재만 인정
교과서	3104	중고 교과서 집필/심의, 연구	30 /10	·최대 60점 이내(년간)
연구 보고서	3105P	본 대학 정책 연구보고서/일반 연구보고서	15 /10	· 최대 20점 이내(년간)
자격취득	3106	기술사 이상 국가 자격증을 취득	50	

※ 세부시행지침

1) 3101P :

- SCI급 학술지란 SCI, SSCI, A&HC, SCI-E, SCOPUS, Index Medicus에 등재된 학술지를 말한다.
- 국제 학술지란 SCI급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는 국외 학술지를 말한다. (단, 창간호는 인정하지 않음)
- 기타 학술지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학술지를 말한다. (단, 창간호는 인정하지 않음)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후보지를 제외한 국내학술지는 연간 4회 이상 발행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교수가 미제출 시 불인정한다.

2) 3102 :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 주관 이상의 국내외 학술대회이어야 하며, 발표 프러시딩과 발표자 명단이 인쇄된 학술대회 공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3103P :

- 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서의 겉표지, 초판 발행일, ISBN 번호(NCS기반 교수학습지침서는 예외로 함) 및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저서는 발행 후 2년 이내에 1학기 이상 강의를 이루어진 년도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워크시트, 핸드북, 가이드북 형태의 강의교재는 저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저서는 그 구성과 내용에 따라 제출 자료가 평가기준에 미흡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다.

4) 3105P : 본 대학 정책 연구보고서/일반 연구보고서는 본 대학의 산업기술연구소를 통한 공모과제에 한한다.

5) 3106 : 전공 관련 기술사, 건축사, 변리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국가자격증 취득에 한한다.

6) 연구분야 업적의 득점은 단독 연구를 기준으로 한 점수이며, 2인, 3인, 4인 공동 연구는 각각 단독 연구의 70%, 50%, 30% 실적으로 한다. 5인 이상인 경우는 (100/전체연구자 수)%의 실적으로 한다.

7)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 3101P: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저자가 2명이상인 논문에서 제1저자
- 3104: 중고 교과서의 책임 집필자
- 3105P: 연구자가 2명이상인 연구보고서의 연구책임자

표 4-2 실기 세부분야의 범위 및 배점

부 문	항목번호	항목내용		평가단위	점수	비 고
전시 창작	3201P	국제전	개인전	회당	50	단체전 최고점 : 50점
	3202P		그룹전	회당	30	
	3203P		단체전(공인학회/협회)	회당 (최대3회)	15	
	3204P	국내전	개인전	회당	40	
	3205P		그룹전	회당	20	
	3206P		단체전(공인학회/협회)	회당 (최대3회)	10	
체육	3207	국제	공인심판자격취득	회당	50	
	3208		공인지도자자격취득	회당	30	
	3209	국내	공인심판자격취득	회당	30	
	3210		공인지도자자격취득	회당	10	
건축 · 미술	3211P	국제전, 미술대전, 건축대전, 산업디자인대전, 실내건축대전, 국제현상설계	본 상	회당	50	
	3212P		특선이상/초대출품	회당	30	
	3213P		입선이상	회당	10	
	3214P	공인된 지역규모, 공공단체, 민간단체 공모전, 국내현상설계	본 상	회당	40	
	3215P		특선이상/초대출품	회당	20	
	3216P		입선이상	회당	5	

※ 세부시행지침

- 1) 학교에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한하며, 실기분야에 대한 모든 대회 규모 및 입상 인정 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2) 실기 부문 업적을 2인, 3인, 4인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는 각각 단독 활동의 70%, 50%, 30% 실적으로 한다. 5인 이상인 경우는 (100/전체참여자 수)%의 실적으로 한다.
- 3) 전시창작 :
 - 그룹전은 20인 이하, 단체전은 20인 초과를 의미하며, 국내외 개인전/국내외 그룹전/국내외 단체전의 인정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심의 결정한다.
 - 그룹전 이상의 모든 전시는 인쇄된 작품집과 함께, 별도의 전시장 사진(3 ‘x5’) 5매 이상, 모든 전시는 전체작품이 수록된 별도의 사진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 4) 건축·미술 : 국제전, 대한민국 미술/건축 대전급 이상이란 동급 규모 또는 그 이상의 미술, 건축, 디자인관련 대회를 지칭한다. 수상내용의 적용범위가 애매할 경우 등위가 표현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봉사 분야

1. 봉사활동은 교내 활동과 대외 활동을 통합하여 평가한다.
2. 임기가 있는 직무를 수행한 경우는 평가 기간 내에 3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에 한하여 재임기간을 월수별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3. 봉사 분야의 범위 및 배점은 표 5-1과 같다.

표 5-1 봉사활동의 평가항목과 점수

부분	항목번호	항목내용	점수	비 고
보직	4001	학부장, 센터장급 이상	25	· 1종 인정
	4002	학과장	20	
	4003	동양미디어 주간교수, 여학생 지도교수	10	
위원회	4004	각종 교내 위원회 위원 A/B/C 등급	10/8/6	· 1종 인정
학교TFT	4005P	교내 TFT 위원	10	· 최대 2건 이내
동아리 지도	4006	교내 등록 동아리 지도교수	10	· 1종 인정
신입생 유치활동	4007	신입생 유치를 위한 관련기관(고등학교, 산업체 등) 방문	1	· 최대 5건 이내
단체지도	4008	해외 연수, 업체 견학, 전시·박람회 등의 단체 인솔·지도	1	· 최대 3건 이내
행사참석	4009	학교 또는 행정 부서 주관의 행사 참석	1	· 최대 5건 이내
학회	4010	국내외 학회 임원/위원	5/3	· 1종 인정
평가위원	4011	공공기관의뢰 평가, 출제, 심의위원	2	· 최대 5건 이내
교육,강연	4012	공공기관의뢰 교육, 강연	3	· 최대 2건 이내
언론, 토론회	4013	중앙일간지 기고, 종합편성채널·공공기관 토론회 패널, 방송출연(전문가)	5	· 최대 2건 이내
기금 및 장학금	4014P	장학금, 발전기금, 기부금 모금	100 만원/당 1점	· 최대 50점 이내
순수 봉사활동	4015	지역 또는 국제 사회를 위한 순수 봉사 활동	3	· 최대 1건 이내

※ 세부시행지침

- 1) 4004 : 교내 위원회는 1년간의 회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업적평가위원회에서 A/B/C 등급을 정하여 산정하며, 단독 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
- 2) 4005P : 학교 TFT 위원은 총장의 결재를 득한 TFT위원회에 한하며 단독 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
- 3) 4006 작품동아리 지도교수는 2인까지 100% 인정하며, 학술동아리는 1인만 인정한다.
- 4) 4007 : 해당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하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독 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

5) 4008 :

○ 해외 연수, 업체 견학, 현장 답사, 전시·박람회등에서 학생 또는 직원 단체의 인솔 및 지도 실적으로 해당부서에 신고된 것만을 인정한다.

○ 수업 대체가 아닌 순수 외부 활동만을 인정한다.

6) 4009 : 취업 캠프, 연수, 워크샵, 특강, 공청회, 교수회의 및 과제 설명회 등의 대학차원 및 행정부서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참가 실적으로 최대 5건까지 인정한다.

7) 4010 : 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급 이상만 인정한다.

8) 4011, 4012, 4013 : 공공기관의 의미는 정부 및 산하단체(중기청,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가출연연구기관 등)를 의미하며 위 기관이 주관하는 평가활동을 의미한다.

9) 4015 : 공공 기관, 공공 단체 또는 대학 주관의 순수 봉사활동에 한하며, 5일 이상의 봉사실적만 인정한다.

제 6 장 가점

1. 평가기간 중에 발생된 대학 내외의 각종 상훈(감사장, 감사패, 격려장 등은 제외) 등의 점수의 가점 사안에 대해서는 표 6-1에 규정된 일정 점수를 개별교수 점수에 가한다.
2. 가산 요인이 있을 시 해당 교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가점의 인정 여부는 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표 6-1 개별교수 가산점 항목별 점수

부 분	항목번호	항목내용	점수
훈장·표창	5001P	훈장, 정부표창	60
	5002P	교내표창	20
학술상 /논문상	5003P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 이상 수여 학술상, 논문상	30
교수학습 연구대회	5004P	전국 대학·전문대학 교수학습연구대회 수상	30

※ 세부시행지침

- 1) 2명이상의 공동 수상인 경우에는 수상자 수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한다.
- 2) 5001P, 5002P : 대외활동의 공로로 정부 기관 또는 광역자치단체급 이상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경우와,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장 이상의 표창 또는 포상을 받은 경우에 인정하며, 장기근속표창은 인정하지 않는다.

[별첨2] <개정 2016.03.01>

강의평가 시행세칙

제1조(목적)

- ① 강의계획서, 강의의 질, 교수·학생 상호작용, 학습량 및 강의 만족, 교재 및 강의의 적절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담당교수의 수업방안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 ② 강의평가 결과를 담당교수에게 공개하여 교과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강의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도록 한다.

제2조(횟수 및 기간)

강의평가는 학기당 2회 실시한다.

- ① 1차평가: 학기의 5주차에 시행한다. 1차 강의평가는 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교수의 강의 개선에 활용한다.
- ② 2차평가: 매 학기 수업종료일부터 성적확정일 전까지 시행한다.

제3조(대상강좌)

대학의 모든 강좌(산업체위탁교육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포함)에 대하여 평가한다.

단, 강좌의 특성이 강의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예:현장실습)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방법)

- ① 강의평가 실시강좌의 “강의평가 설문지”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② 강의평가는 수강생의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강의평가를 실시 한 과목에 대해서만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2차 강의평가는 설문내용과 함께 강의계획서의 기본정보를 포함하여, 교재의 이미지, 강의완료 후 수행가능내용 등을 수강생들이 효과적으로 인지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평가의 신뢰도를 위해서 각 설문영역별 내용들이 별도화면으로 구성되어 단계별로 시간차를 두어 평가하도록 한다.

* 강의평가를 위한 강의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전체 강의평가의 변별력과 신뢰도를 위해서 강의 기본정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1) 강의교재가 있을 경우 이미지를 삽입하여야 한다.
- 2) 수강생의 입장에서 “강의완료 후 수행가능내용” 란을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단, 책임교수가 있는 강좌의 경우, 책임교수가 이 내용을 작성하도록 한다.)

- 설문영역의 강의만족도 항목인 - ⑩이 강의를 수강하여 “강의 완료 후 수행가능 내용 “을 만족하였다.(주의! 현재 평가화면의 좌측하단부분 확인) - 에 대한 내용으로 평가가 원활하도록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5조(점수 산출 방법)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는 학생에 대한 강의평가 설문조사 결과 취득한 항목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과목별 점수는 강좌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하고, 교수별 점수는 전체강좌별 점수의 평균값으로 산정한다. 강의평가 계산방법 및 점수는 표 2-1와 같다.

표 2-1 강의평가 설문조사 분야 및 점수

부 분	항목번호	세부항목	점 수	비 고
강의평가	1114P	강의평가 점수	강의평가 점수 = 강의평가 설문조사 점수의 합 ÷ 12 × 14	·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 세부시행지침

- 1) 강의평가 점수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 강의평가 설문조사 점수는 문항별 항목의 점수 평균값의 합을 12로 나누어 평균한다.(①~⑧=5점, ⑨=10점. ⑩=10점, ①~⑩의 합계점수 ÷ 12)
- 3) F학점 이수 학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4) 강좌별 평균 평가점수가 상위 및 하위 5%에 속하는 학생들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단, 5% 인원 계산 방법은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에서 버림으로 한다.
- 5) 학생들은 개별 과목 성적 조회 시 해당과목의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 6) 평가점수 계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10명(평가 제외자 불 포함)으로 한다. 최소인원 미달된 강좌의 경우 강의평가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
- 7) 강의 규모 50명 이상의 전공강좌의 경우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6조(결과 열람 및 피드백)

강의평가 결과와 수강생 의견은 교원별로 대학의 학사행정시스템스에 로그인하여 대학 전체평균, 학과 평균, 과목 평균 및 개인의 강의 평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강의평가 분류별 정규분포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피드백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결과 활용)

- ① 강의평가 결과는 교원의 업적평가 및 승진, 재임용에 활용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강의평가 설문지(1차)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강의가 되도록 교수님을 도와 드리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2-2 강의평가 설문지(1차)

구분	설문 내용		점수
학생 평가	1. 이 수업에 본인은 몇 번이나 결석하였는가? (없다, 1회, 2회, 3회, 3회 초과)		
	2.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질의 및 응답, 과제제출, 연습 및 복습, 팀 활동 참여 등)		
	3.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강의 평가	강의진행 및 방법	① 수업은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해 가면서 진행되었다.	1~5
		② 교수의 교수방법(언어표현의 정확도, 설명의 명확성, 사례제시의 적절성)에 만족하고 있다.	1~5
		③ 질의 응답을 비롯하여,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에 만족하고 있다.	1~5
	강의내용	④ 이 강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주관식
		⑤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주관식

강의평가 설문지(2차)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강의가 되도록 교수님을 도와 드리
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2-3 강의평가 설문지(2차)

구분	설문 내용	점수	
학생 평가	1. 이 수업에 본인은 몇 번이나 결석하였는가? (없다, 1주분 이하, 2주분 이하, 3주분 이하, 3주분 초과)		
	2.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질의 및 응답, 과제제출, 예습 및 복습, 팀 활동 참여 등)		
강의 평가	강의교재 및 계획서	① 교재나 수업자료의 내용 및 수준이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1~5
		② 강의계획서가 과목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1~5
	강의준비	③ 교수는 강의에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 추고 있었다.	1~5
		④ 강의 준비는 매번 충실히 하였다.	1~5
	강의진행 및 방법	⑤ 보강을 하지 않은 휴강이 없었으며 강의시간이 잘 지켜졌다.	1~5
		⑥ 교수의 교수방법(언어표현의 정확성, 설명의 명확 성, 사례제시의 적절성, 질의응답, 참여유도)에 만족 하였다.	1~5
		⑦ 과제의 내용이 좋았고, 그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알려 주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1~5
		⑧ 성적 평가 방식이 적절하고 공정하였다.	1~5
	강의 만족도	⑨ 교수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였다.	(1~5)X2
		⑩ 이 강의를 수강하여 “강의 완료 후 수행가능 내 용”을 만족하였다. (주의! 현재 평가화면의 좌측하단 내용을 먼저 확인한 후 평가하세요.)	(1~5)X2

제8조(화면구성)

수강생용 강의평가의 화면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면의 종류

1차 평가 세부평가화면과 1차 평가 전체항목화면, 2차 평가 세부평가화면과 2차 평가 전체항목화면으로 전부 4개의 화면으로 구성

② 평가진행에 있어서의 화면구성의 특징

설문항목별 내용들을 최소2항목에서 최대 4항목만 화면에 표현하였으며, 또 설문내용의 집중과 인지의 효과를 위해 응답이후, 최소한의 일정시간차를 두어 다음 설문내용이 화면에 표현되도록 구성

③ 세부평가 화면구성의 특징

세부평가 화면은 과목명, 담당교수의 사진, 교재명(이미지제공), 강의완료 후 수행가능내용, 강의계획서 기본정보내용으로 구성

세부평가의 화면은 수강생들이 해당 설문에 대한 평가진행 시 필요한 내용들을 동일한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화면 구성

평가시 화면활용 예)

- 강의방법이나, 평가방식에 대한 설문평가의 경우 화면상단의 “강의 계획서 기본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여 평가
- 또 교재의 수준과 활용에 대한 설문평가 역시 좌측중간의 “교재” 관련 화면에서 확인하여 평가
- 강의만족도에 해당되는 설문평가는 좌측하단의 “강의완료 후 수행가능 내용”란에서 확인하여 평가

그림 2-1 수강생용 - 1차 평가 세부평가화면



그림 2-2 수강생용 - 1차 평가 전체항목화면

성적관리 | 강의평가

2010년도 2학기 과목명 가구디자인 [1996207 MC]

저장 닫기

과목명: 가구 디자인 담당교수: 홍길동

교재: 가구디자인, 디자인의 요소들, 기초조형 Thinking, JC

강의 완료 후 수행가능 내용

- 형태 및 구조원리, 재료 그리고 인체의 비례가 의자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식 배양
- 저명한 여러 작가 조사를 통해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감각을 디자인에 적용 가능
- 최종 디자인 결과물인 스툴(STOOL)을 제작해 봄으로써 최대한 기법고, 심미성이 뛰어나며, 가장 구조적인 디자인에 대한 창조적 능력 함양

1차 강의평가 설문내용

* 주의!!! 한 문항씩 순서대로 모든 문항에 답변하여야 저장되며, 작업저장 이후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설문영역	번호	내용
학생평가	1	이 수업에 본인은 몇 번이나 결석하였는가? <input type="radio"/> 없다 <input type="radio"/> 1회 <input type="radio"/> 2회 <input type="radio"/> 3회 <input type="radio"/> 3회 초과
	2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질의 및 응답, 과제제출, 예습 및 복습, 팀 활동 참여 등)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3	이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주관식)
강의진행 및 방법	1	수업은 학생들의 이해정도를 파악해 가면서 진행되었다.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2	교수의 교수방법(언어표현의 정확도, 설명의 명확성, 사례제시의 적절성)에 만족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3	학생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에 만족하고 있다.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강의내용	4	이 강의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주관식)
	5	이 강의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주관식)

<< 처음으로

그림 2-3 수강생용 - 2차 평가의 세부평가화면

성적관리 | 강의평가

2010년도 2학기 과목명 가구디자인 [1996207 MC]

저장 닫기

과목명: 가구 디자인 담당교수: 홍길동

교재: 가구디자인, 디자인의 요소들, 기초조형 Thinking, JC

강의 완료 후 수행가능 내용

- 형태 및 구조원리, 재료 그리고 인체의 비례가 의자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지식 배양
- 저명한 여러 작가 조사를 통해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감각을 디자인에 적용 가능
- 최종 디자인 결과물인 스툴(STOOL)을 제작해 봄으로써 최대한 기법고, 심미성이 뛰어나며, 가장 구조적인 디자인에 대한 창조적 능력 함양

강의계획서 기본정보

담당교수: 홍길동

강의실/시간: 목:2(3-503), 3(3-503), 4(3-503) 이메일: robotomy@dongyang.ac.kr 전화번호: 1918

연구실: -

면담가능시간: 목요일 오후2시

도시사용: 입력상태: 입력완료

교과목개요: 이 강의는 형태 및 구조원리, 재료 그리고 인체의 비례가 의자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한다. 디자인의 심미적인 부분은 저명한 여러 작가조사를 통해 작품에서 나타나는 조형적 감각을 디자인에 적용해 본다. 최종 디자인 결과물인 스툴(STOOL)을 제작해 봄으로써 최대한 기법고, 심미성이 뛰어나며, 가장 구조적이며 아름다움을 함양하도록 한다.

교과목목표: 과제가 요구하는 문제점과 과제의 목적에 대해 이해한다. 디자인상 진행단계와 우선시항을 정리하고 과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간다.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인체공학/기공의자 구조/재료 등)능력을 훈련한다.

수업시 사용도구: 스케치 및 렌더링 도구 및 소프트웨어에 활용할 재료 (폼보드 / 우드라 / 골판지 등),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스캐너

평가방법: 출석 20 / 중간과제 30 / 기말과제 40 / 수업참여도 10

수강안내: 자료분석과 실기가 병행되는 창조적 훈련중심의 과제를 완성해야하는 수업이므로 사전 수업준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함

강의평가 설문내용

* 주의!!! 한 문항씩 순서대로 모든 문항에 답변하여야 저장되며, 작업저장 이후에는 조회만 가능합니다.

설문영역	번호	내용
강의교재 및 계획서내용	1	교재의 내용 및 수준이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2	강의계획서가 과목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input type="radio"/> 전혀아니다 <input type="radio"/> 그렇지않다 <input type="radio"/> 보통이다 <input type="radio"/> 그렇다 <input type="radio"/> 매우그렇다

<< 이전으로 다음으로 >> 전체보기

그림 2-4 수강생용 - 2차 평가 전체항목화면



2. 교수용 강의평가 결과조회용 화면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면의 종류

강좌담당교수가 진행한 강좌전체결과에 대한 조회화면, 그리고 강좌별로 설문의 세부항목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현된 강좌별 결과분석(피드백)화면, 전체 2가지로 구성

② 강좌별 결과분석(피드백)화면세부평가의 화면 구성의 특징

강좌별 결과분석 및 세부평가의 화면은 강좌의 설문평가에 대한 모든 항목에 대한 결과가 표현되며, 이와 함께 강의평가 분류별 분포도가 표현된다.

특히, 강의평가 분류별 분포도는 설문평가를 영역별로 분석하여 표현한 것으로 교수자 자신이 분석결과로서의 “나의점수, 백분율, 전체평균, 표준편차” 등을 통해 현재의 위치를 확인, 피드백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

그림 2-5 교수용 - 평가결과 전체강좌화면

e 서비스 > 수업과 성적 > 강의평가결과조회 도움말

년도 2010 학기 2학기 교번 2003036 교직원명 홍길동 조회 조건변경

학과/전체평균

구분	평균	학생평가	강의교재 및 계획서	강의준비	강의진행 및 방법	강의만족도
본인 [2003036] 홍길동	4.63	4.33	4.55	4.66	4.58	4.78
전체	4.53	4.35	4.26	4.45	4.44	4.56

과목별 평가점수

NO	과목번호	과목명	과목평균	학생평가	강의교재 및 계획서	강의준비	강의진행 및 방법	강의만족도
1	2000104	포트폴리오	4.63	4.33	4.55	4.66	4.58	4.78
2	2003032	실내설계스튜디오(III)	4.63	4.33	4.55	4.66	4.58	4.78

강좌별 평가점수

NO	과목번호	강좌	과목명	평균	세부내역	학생평가	강의교재 및 계획서	강의준비	강의진행 및 방법	강의만족도
1	2000104	W1	포트폴리오	4.56	확인	4.63	4.33	4.55	4.66	4.58
2	2000104	W1	가구디자인	4.56	확인	4.63	4.33	4.55	4.66	4.58
3	2000104	W2	공공디자인	4.56	확인	4.63	4.33	4.55	4.66	4.58

< >

찾기 정렬 엑셀 인쇄

그림 2-6 교수용 - 강좌별 평가결과 분석화면

성적관리 | 강의평가 닫기

년도 2010 학기 2학기 과목명 포트폴리오 수강인원 27 참여인원 26 참여율 96%

설문영역	번호	설문내용	보기1	보기2	보기3	보기4	보기5
학생평가	1	이 수업에 본인은 몇 번이나 결석하였는가?	17	5	3	1	0
	2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65%	19%	12%	4%	0%
강의교재 및 계획서	1	교재의 내용 및 수준이 적절하였으며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17	7	2	0	0
	2	강의계획서가 과목의 목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65%	27%	8%	0%	0%
수업전반 건의사항	1	교수님 포트폴리오 평가가 힘들었어요.....					
	2						

강의교재 및 계획서

나의 점수(*)=4.45, 상위 40%
전체평균(μ)=4.33, 표준편차(σ)=0.51

강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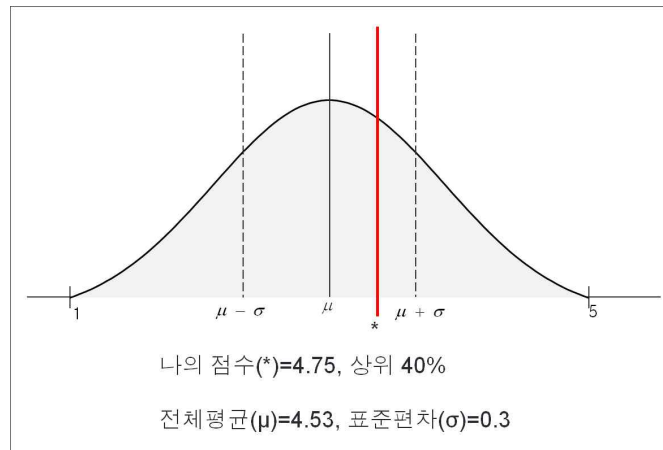
나의 점수(*)=4.45, 상위 40%
전체평균(μ)=4.33, 표준편차(σ)=0.51

강의 진행 및 방법

강의 만족도

엑셀 인쇄

7-2-3. 교수용 - 정규분포 분석내용



[별첨3] 삭제 <개정 2015.03.01>